

---

# 기금운용 투자관리 지침서

---



**DST 대전과학기술대학교**

# 기금운용에 관한 투자관리 지침서

## 1. 개 요

### 1.1 투자관리 지침 개요

- 가. 본 투자관리 지침(이하 "지침서"라 한다)은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적립 기금 중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에의 투자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자산운용에 관한 기본 원칙과 주요내용을 규정한 명문화된 근거이자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나. 본 지침서는 사무처에서 작성하고 기금운용심의회의 승인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지침서의 내용은 1년 단위로 검토 및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 본 지침서의 제 규정은 기금운용과 관련이 있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참고 되고 준수되어야 한다.
- 라. 투자할 기금은 교비회계에서 적립한 건물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제외한 기금을 말한다.

### 1.2 투자관리 지침의 목적

- 가. 본 지침서는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기금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투자방안, 투자목표 및 투자지침을 제시한다.
- 나. 본 지침서는 투자방안, 투자목표 및 투자지침 그리고 성과평가기준 등을 내부관리자 및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한다.

다. 본 지침서는 기금투자가 사립대학에 관련된 법을 준수하였는가의 여부를 감독하는 지침을 제공한다.

## **2. 관련 법령**

가. 기금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3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의 5. 6, 사학기관재무·회계 규칙 제22조의2 제 2항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적용을 받고 있다.

## **3. 기금운용의 목적**

### **3.1 기금운용의 목적**

가. 기금의 중장기 운용은 "기금의 실질가치 유지를 통한 대학재정이 장기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금의 자산은 대학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여 대학교육 및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한다.

나. 이를 위해 기금관리주체는 자금의 수급조건과 시장상황을 분석하여 허용위험 수준을 설정하고, 이 수준에서 수익률이 극대화 되도록 운용하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 **3.2 기금운용의 기준**

가. 기금의 운용은 안정성을 기본으로 한다.

나. 안정성을 크게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도모하며 기금의 확대조성에 기여한다.

다. 기금의 투자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분산투자의 원칙이다.

라. 위험관련 상품 투자 시 신용위험과 자본손실 위험 등 투자리스크를

감안하여 외부 전문운용기관을 통한 간접투자를 원칙으로 한다.

마.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적정수준의 유동성 자금을 확보한다.

### 3.3 투자 기금의 조달

가. 투자 기금은 등록금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건축 적립금을 제외하고, 적립금으로 운용자금을 조달한다.

## 4. 기금운용 체계

### 4.1 기금운용 조직과 역할

가. 기금 운용심의회

▶ 기금운용심의회는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에 관한 계획 수립
3. 기금운용에 대상상품 선정 및 정보자료 조사
4. 그 밖에 기금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

나. 기금 운용심의회 구성

▶ 기금운용심의회는 9인 (외부전문가 1인 포함)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다. 기금운용 관련 부서 및 업무내용

▶ 기금운용 업무는 행정지원처에서 관장한다.

1. 기금운용 및 관리주체 선정 (금융기관 예치업무, 유가증권 투자업무)
2. 기금운용 계획 수립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에 보고
3. 리스크 관리, 성과평가 및 보고

4. 대학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2조 ①~③항에서 규정한 사항

## 4.2 기금의 위험관리. 성과평가. 보고체계

가. 위험관리와 성과평가는 외부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기금운용부서에 수행하고 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서 위탁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나. 기금 투자에 대한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법규위험, 운영위험 등이 인식될 때에는 기금운용부서는 즉시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5.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도

### 5.1 목표수익률

가. 기금의 목표수익률 개념은 "전략적 자산배분을 위한 제약조건이며 전략적 자산배분안이 충족시켜야 할 최소수익률"로 정의한다.

나. 운용자금은 단기자금과 장기자금으로 분류하여 각 목표수익률을 설정한다.

- 단기자금 : 은행 1년 예금금리로 설정한다.
- 장기자금 : 3년 만기 국공채 수익률로 설정한다.

### 5.2 허용위험한도

가. 각 상품별로 매입원가 대비 시장평가액이 일정비율 이상 하락시에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매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내외 시장상황이나 개별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도가 적절치 않다고 인

정되는 경우 기금운용심의회회의 자문을 거쳐 매도를 유보할 수 있다.

▶ 상품별 위험한도

상 품	허용 위험한도
주식	-30%
채권	-20%
펀드(주식형, 채권형등)	-30%
기타 파생상품	-30%

## 6. 자산배분

### 6.1 투자가능 자산

#### 가. 단기자금

- 보통예금, 정기예금
- 양도성예금증서(CD)
- 기타 유동성자산(MMDA, MMF, MMT등)

#### 나. 장기자금

- 정기예금
- 양도성예금증서(CD)
- 주식(증권거래소 상장주식)
- 채권(회사채, 금융채 : 신용등급은 채권 BBB+ 이상)
- 기타 유동성자산(MMDA, MMF, MMT등)

### 6.2 자산배분 원칙

가. 자산배분은 중장기(연간) 전망에 근거한 전략적 자산배분을 원칙으로 하며, 단기적(월, 분기)으로 포트폴리오 내 자산별 투자비중의 조정

시에는 전략적 자산배분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산집단간의 상대적 수익률 변화에 대한 예측을 통한 전술적 자산배분을 활용한다.

## 6.3 투자대상별 투자비율 및 한도

### 가. 투자대상별 투자비율 및 한도

구 분		투자 비율	한 도(투자 범위)
단기자금	유동성자산	10%이하	0 ~ 10%
	정기성예금	90%이상	0 ~ 100%
	합 계	100%	
장기자금	정기성예금	50%이상	50 ~ 100%
	주식(주식펀드포함)	20%이하	0 ~ 20%
	채권(채권펀드포함)	30%이하	0 ~ 30%
	합 계	100%	

※ 투자비율의 기초금액은 투자가능금액으로 한다.

- 기간 분산을 통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확보한다.
  - 1년 미만 단기상품 : 은행예금, 신용등급 BBB+이상의 채권
  - 1~5년 중장기 상품 : 신용등급 AA이상의 채권
  - 10년 이상 초장기 상품 : 신용등급 AA이상의 채권

## 7. 위험관리방안

### 7.1 위험종류별 정의 및 관리방법

가. 기금의 투자 및 운용에 있어 내재된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이 초래할지도 모를 손실에 대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나. 위험의 인식범위는 기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금운용 조직의 제반 업무활동 및 자산의 운용 등이며 인식대상은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법규위험, 운영위험 등이다.

## 7.2 위험관리 조직

- 가. 위험관리에 관한 업무는 기금운영부서에서 자문사, 외부운용사 등의 협조를 받아 수행한다.
- 나. 외부운용사에 위탁되어 운용되는 경우 상품의 적정투자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한다.

## 8. 내부운용 및 외부운용

### 8.1 내부운용 및 외부운용 정책

- 가. 기금은 내부 전문 인력을 통하거나 외부 전문운용사를 통하여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 나. 기금은 외부 운용시 외부 전문기관의 활용과 투자방식의 다양화를 통하여 자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위탁운용사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선정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다. 외부운용 시 위탁운용계약에는 운용대상, 운용방법, 기준수익률, 손실 허용한도, 성과측정 등을 포함함으로써 운용사가 자의적으로 운용방식을 변경하거나 과도한 위험을 선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8.2 외부위탁투자 기관

- 가. 외부위탁운용사는 다음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증권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

### 8.3 위탁운용기관 선정기준

- 가. 외부위탁 운용사는 운용사의 신용등급, 투자실적, 자본비율 등의 안



정성 지표, 법규 준수실적 등의 객관적 지표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

나. 외부 위탁 운용사의 선정은 기금·자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다. 위탁운용과 관련된 기본수수료 및 성과수수료는 업계평균 수수료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지급하도록 하며, 과도한 덤핑입찰을 금지한다.

## 9. 성과평가

### 9.1 성과평가의 원칙

가. 성과평가는 기금운용이 사전에 정의된 투자관리지침서에 부합하도록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계획되고 집행되었는지를 측정,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성과평가는 내부운용과 외부운용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통해 향후 기금운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단기 성과평가는 물론 장기 성과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 9.2 성과평가의 기준

가. 기금운용 실적에 대한 평가는 해당기간의 실현수익률 산출 후 기준 수익률과 비교하여 실시한다.

나. 기준수익률은 투자자산별 투자 비중에 따른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다.

다. 각 투자자산별 기준수익률

투자자산	기준수익률
1개월 미만 투자	보통예금 이자율
1개월 ~ 1년 미만	한국은행 고시 및 정기예금 수익률
채권 만기 1년(3, 5년)	국고채 1년(3년, 5년) 수익률
주식	KOSPI 지수 수익률